

##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, 오늘부터 전면 시행

- 관세청, 9월 1일 신고분부터 「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」 본격 적용
- 성실·소규모 기업은 제출 대상 제외, 중복자료 제출 불요 등 간소화 조치 병행

-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·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, 「과세가격 신고자료(이하 '과세자료') 일괄제출 제도」를 9월 1일(월)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  -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,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,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(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[AEO],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[ACVA])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.
  -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<sup>\*</sup>로 명확히 하고,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.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.
- ※ ①권리사용료, ②생산지원, ③수수료, ④운임·보험료·기타운송관련비용, ⑤용기·포장비용, ⑥사후귀속 이익, ⑦간접지급금액, ⑧특수관계자 거래
-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,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,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.
  -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·보험료·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,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.

- 또한 제도 안내자료 및 기업 안내문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다국적기업 본사 등 수출자에게도 제도 설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, 향후 신고 대리인 관세사가 고객사의 자료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.
- 한편 상반기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제출 시범운영에서는 46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.
- 위험도가 높아 관세조사 대상으로 이첩된 1개 기업을 제외하고, 나머지 9개 기업은 8개 분야에 해당 사항 없음을 소명하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했다.
-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업 중 일부는 자료 준비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스스로 정정하였으며, 이는 이번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 가격신고 오류 점검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.
- 이명구 관세청장은 “신고납부제도의 근간은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”이라고 강조하며, “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, 관세사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신고 대리인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- 이어 “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이 기업에 조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, 공정 과세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공정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## 붙임 1.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

### 2. ‘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’ 리플릿

담당 부서	관세청 심사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용철 (042-481-7860)
		담당자	사무관	남우현 (042-481-7628)



##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

분야 (8개 분야)	과세가격결정자료(분야별 1개 이상)
① 권리사용료	○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
	○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
② 생산지원	○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
	○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
③ 수수료·증개료	○ 수수료·증개료 등 계약서
	○ 수수료·증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
④ 운임·보험료·기타 운송관련 비용	○ 운임·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
	○ 운임·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
⑤ 용기·포장비용	○ 해외포장용역계약서, 용기임대 계약서
	○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
⑥ 사후귀속이익	○ 수입 후 전매·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·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
	○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
⑦ 간접지급금액	○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
	○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
	○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
	○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
⑧ 특수관계자 거래	○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
	○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

- ※ 1.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**최초 가격신고건의** 영 제15조제5항 제1호 “**송품장**”과 제2호 “**수입물품 구매계약서**”는 필수 제출
2. ①부터 ~ ⑥까지: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
3. ⑦ 간접지급금액: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, 채무 변제,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
4. ⑧ 특수관계자 거래: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

「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」 도입     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

KOREA CUSTOMS SERVICE

# 과세가격 신고 제도

## 개편 안내

1. 「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」 도입      2.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

※ 상세 자료 확인





관세청



〈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〉

### 1 과세자료 제출 생략

»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(AEO, ACVA)

- AEO :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
- ACVA :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 물품

» 납부세액 연 5억원 미만 기업

- 납부세액 확인 방법 : 유니파스(unipass.customs.go.kr) ⇒ 정보조회 ⇒ 자사실적 ⇒ 수출수입 환급 납세실적 ⇒ '제세납부실적' 조회(전년도 1년)
- ※ 과세가격 신고는 종전과 같고, 자료 제출만 생략

### 2 최초 수입 건만 과세자료 제출

» 같은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연 1회 제출

- 다른 품목이라도, 동일 과세자료(계약서, 내역서 등)로 입증되는 경우 '같은 조건'으로 간주

### 3 과세자료 제출 목록 구체화

» 수입 거래 형태별, 과세자료 제출대상 규정 ⇒ 8개분야

- ① 권리사용료, ②생산지원, ③수수료·증개료, ④운임·보험료 등, ⑤용기·포장비용, ⑥시후귀속이익, ⑦간접지급금액, ⑧특수관계자 거래
- ※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시 '미제출 사유서' 제출

### 4 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(30일)

» 기업의 과세자료 준비 기간 확보 ⇒ 신속 통관 지원

- ※ 가격신고 시 '지연 제출 사유서'를 제출하고, 통관 후 30일 이내 과세자료 제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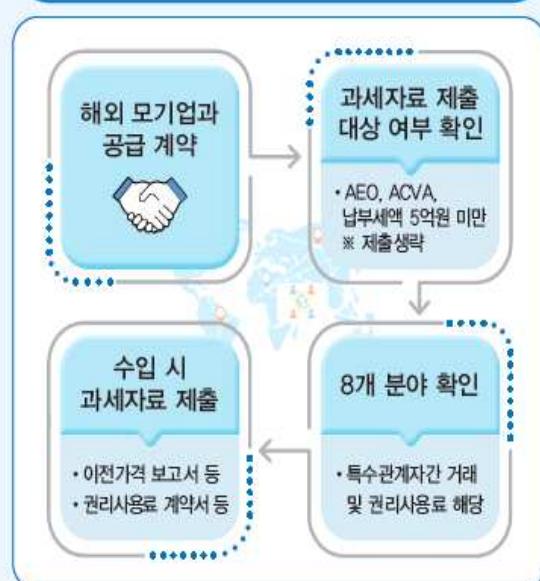
예시  
1

## 글로벌 브랜드 기업



예시  
2

## 다국적 기업



### 과세자료 미제출, 이렇게 관리합니다.

#### 세관장이 통관 후 자료 제출 요구

※ 30일 이내 제출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 
한 차례 연장(30일) 가능

#### 미제출 시 조치 가능

-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
- ② 담보제공 생략 중지 ③ 관세조사 또는 세액심사
- ④ 기타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

## 2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

〈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〉

#### ✓ 주관적 판단을 객관적 사실확인으로 변경

##### ▶ 특수관계자 관련 판단 문항 삭제

7. (c)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? (삭제)  
7. (d) 거래가격이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합니다?  
까? (삭제)

##### ▶ 특수관계자 간 수입가격 결정방법 문항 신설

8. (d) [수입가격 결정방법]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 
거래 가격 결정방법은 무엇입니까?  
 ① 국내판매가격 (표준판매가격 · 평균판매가격 · 순판매가격 등) ×  
(1-할인율 · 재판매마진율)  
 ② 국내판매가격 (표준판매가격 · 평균판매가격 · 순판매가격 등) –  
목표매출이익 (– 운임 · 관세 등)  
 ③ 제조원가 (표준원가 · 제3자구매가격 등) × (1+Mark up율)  
 ④ 제조원가 (표준원가 · 제3자구매가격 등) × 계수  
 ⑤ 기타 (상세 결정방법 입력)

#### ✓ 과세자료가 첨부된 당해 연도 최초 수입신고 번호를 기재하도록 신설

7. 과세자료가 첨부된 최초 수입신고번호 「\_\_\_\_\_」